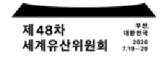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1.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516(2026.4.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재정경제부에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니, 시공사 및 회원사에 안내하여 지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최근 원자재 수급 불균형 상황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유권해석하니,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을 안내하여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사항

○ 공사기간의 연장

- 중동전쟁 상황으로 인하여 원자재의 수급불균형 또는 가격급등으로 인한 자재 조달 지연 등 “수급인” (건설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계약금액의 조정

- 중동전쟁 상황으로 인하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율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함.(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제3항, 제23조제1항)
-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표준도급계약서 제22조제1항)

○ 변경계약서 등의 교부

- 중동전쟁 상황으로 인하여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 도급인은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만일 도급인이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이 공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고, 기간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공사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봄.(표준도급 계약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 지체상금 부과 제외

- 중동전쟁 상황으로 인하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제4항, 제30조제1항)

나. 분쟁의 해결

-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등에 대해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국토교통부 건설 산업과 044-201-3546)
- 본 유권해석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서 내용의 침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음. 끝.



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_중앙회, 금융위원회위원장

주무관	김지호	시설사무관	박현정	건설정책과장	전결 2026. 4. 13. 이익진
-----	------------	-------	------------	--------	-------------------------------

협조자

시행 건설정책과-2264 (2026. 4. 13.)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506 팩스번호 044-201-5547 / hijojiho@molit.go.kr / 대국민 공개